

대학 시설 복합화 사업을 위한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 : 김민희(대구대학교)

공동연구자 : 라휘문(성결대학교)

2023. 6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
3. 연구 방법	3
4.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4
II. 선행연구 분석	5
1. 학교복합화의 개념과 효과	5
2. 학교시설 복합화 운영 사례	8
3. 학교시설복합화 관련 주요 쟁점	9
III.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의 및 운영 현황 분석	13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의	13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현황	18
IV.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연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상 운용 구조 ..	25
1.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운용 구조	25
2.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운용 구조	31
3.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연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상 운용 구조 ..	40
V.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1. 제안이유	45
2. 주요내용	45
3. 일부개정 법률안 및 개정 사유	46
4. 신구조문 대비표	51
5.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 전문	54

VI.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주체별 검토사항 제언	61
1. 법령의 검토	61
2. 조례와 규칙의 검토	62
〈참고문헌〉	69
〈부록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71
〈부록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2]	76

〈표 차례〉

〈표 1〉 학교시설 복합화 대상시설 종류 및 관련부처	6
〈표 2〉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효과	7
〈표 3〉 연도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규모	19
〈표 4〉 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 규모 변화	20
〈표 5〉 특별교부금 규모 추이(2004-2022)	22
〈표 6〉 특별교부금 시·도교육청별 규모 추이	23

[그림 차례]

[그림 1] 재정투자사업 추진 절차	26
[그림 2] 투자심사 업무흐름도	30
[그림 3] 학교복합시설 추진방향	31
[그림 4] 학교복합시설 사업비 지원(예시)	34
[그림 5] 학교복합시설 추진체계별 역할	35
[그림 6] 투자심사 단계별 조치사항	36
[그림 7] 타당성조사 절차	38
[그림 8] 타당성조사 범위 및 분석사항	39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심각한 인구감소 추이가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도심 지역 공동화 현상, 농어촌지역 소멸 등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반면,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고, 워라벨(work-life balance) 확산 및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문화·예술·복지 등 다양한 생활 SOC 확충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인구감소에 따른 유휴 공공시설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학교시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사회 중심에 위치하며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므로 지역공동체의 중심 시설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유대감 형성,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시설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학교 시설은 이러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음
-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학교부지 내에 교육·체육·문화·녹지·보육·복지와 같은 공공시설을 학교를 중심으로 복합적·입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며 궁극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공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학교시설 모델의 새로운 유형임
- 2021년에 제정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복합시설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학교복합시설법에 따라 학교신설 및 증개축 등에 기존의 학교시설이 활용되어 왔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연계하면서 학교시설 복합화도 확대되어 왔으나 최근의 정책 환경변화(국가책임 교육·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늘봄학교 확대 등)에 부응하는데 한계가 나타남
-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2023. 3)」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대학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전문지원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한 사전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도 개정할 필요가 제기되었음
- 특히 학교복합시설의 범위가 대학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이 정립되면서 기존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투입되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대학지원 근거를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하고자 함. 이 과정에서 기존의 「학교복합시설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의 및 운영 현황 분석
 -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념 및 조성 규모, 운용 현황, 근거 법령 등 분석

-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연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상 운용 구조
 -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상 운용 절차, 교육부·지자체·대학 등 주요 참여 주체별로 교부금의 운용 근거와 예상 운용 방안 등 검토
-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 도출
 - 학교시설복합화 대상 내 대학 포함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학 지원 근거 조항 명시 등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 전문 작성
 -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주체별 검토 사항 제언
 - 법령 개정을 통한 사업 근거 기반 마련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검토 해야 할 법령, 지자체 조례·규정, 대학 관점의 사업 개선 요청사항 등의 기타 의견 제언

3. 연구 방법

- 문헌 및 통계자료 조사·분석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념, 규모, 운용 현황 분석
 - 학교복합시설 관련 법령 분석
- 전문가 자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전문가 자문
 - 학교복합시설 관련 전문가 자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학교복합시설법 관련 전문가 자문
- 과제 담당자와의 수시 협의
 - 연구진 및 과제담당자 간 수시 협의

4.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대학시설 확충 및 개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재원 투자가 확대됨으로써 대학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탄력성에 기여
- 대학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교복합시설 개선으로 학생 학습성과 극대화 및 만족도 제고
- 지역사회 내 대학의 역할 제고 및 주민 만족도 제고
- 대학 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성과와 관련한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전문기관으로서의 학교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역량 향상에 기여
- 학교복합시설 대학 담당자 연수 자료로 활용

II. 선행연구 분석

1. 학교복합화의 개념과 효과

○ 학교복합화의 의의와 유형 (오세희, 2023)

- 건축에서 복합화의 의미는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기능이 하나의 공간 또는 대지에 속하여 서로 융합되고, 융합된 기능에 의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함. 그러므로, 학교시설 복합화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학교부지 내에 교육·체육·문화·녹지·보육·복지와 같은 공공에 관련된 시설을 학교를 중심으로 복합적·입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여 궁극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공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학교시설 모델의 새로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오병욱 외, 2009)
- 교육부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학교복합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시설 내 여러 유형의 공공시설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 및 학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학교와 문화·복지 등 주민 생활기반시설을 입체적으로 복합화함으로써 기존의 교사·학생 중심의 폐쇄된 학교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이용하는 지역커뮤니티센터」라고 정의하고 있음(이성룡 외, 2011)
- 이러한 학교내 복합시설의 설치 여부는 학습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 여부를 학교장, 교육감이 판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교의 지역 커뮤니티센터화나 평생교육시설화와 같은 목적에 부합되는 학교

시설 복합화 모델로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한 학교시설 복합화의 주요 대상은 <표 1>과 같음(이성룡 외, 2011)

-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생활SOC의 요구 확대에 따라 학교부지에 학교시설과 생활SOC를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여 학생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함께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중심시설로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주민의 생애주기별 공공서비스를 학교시설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유웅상 외, 2020)

<표 1> 학교시설 복합화 대상시설 종류 및 관련부처

시설 유형	이용 대상	시설종류	관련부처	시행기관
교육 시설	학생 + 지역 주민	유치원, 초·중·고 학교시설	교육부	시·군·구
체육 시설		생활체육시설, 국민체육시설 등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 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녹지 시설		공원 등	국토교통부	
보육 시설	지역 주민	영·유아 보육원	보건복지부	
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 시설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등	행정안전부	

주: 교육시설 이용대상 연령 3세이상, 보육시설 이용대상 연령은 3-5세
출처: 이성룡 외(2011)

○ 지역사회에서 학교시설 복합화의 효과

- 학교시설 복합화의 목적은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이성룡 등(2011)은 우선적으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문화적

- 기본시설을 학교가 제공하여 문화강좌·체력증진 등의 자기계발과 평생학습을 지원하며, 보육시설·주차장 확충 등 주민편의를 증대시켜 학교가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보았음
- 또한, 토지이용 효율 측면에서 지역주민과 공동 활용을 통한 학교 시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고, 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예산투자가 가능한 장점이 있음
 - 학교 및 교육청 입장에서는 외부재원으로 도서관, 체육시설 등을 확충하여 교육과정 및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주5일 수업과 다양한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문화시설을 확충하여 평생학습, U-Learning을 위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됨
 -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주민편의 시설을 학교에 복합화 함으로서 평생교육·체육·문화·복지 등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통합(One-Stop)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 중심에 가용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부지매입비도 절감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음(교육과학기술부, 2008)

<표 2>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효과

항목별	목적	주체별	목적
커뮤니티 중심기능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반 시설 확보를 통하여 커뮤니티 중심기능 역할 수행	지역 주민	학교시설 이용률 증진 및 주민들의 자기계발,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 가능
토지이용	학생 및 주민들의 공동활용 및 입체·복합화를 통한 효율성 증진	학교 및 교육청	외부재원 투입에 따른 다양한 교과과정 지원 및 방과후학교 운영 가능
예산투자	부지확보를 위한 시간 및 예산 절감 가능	지방 자치단체	지역주민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예산투자 가능

출처 : 오세희(2023)

2. 학교시설 복합화 운영 사례

가. 국내 사례

○ 광주 고실중 사례

- 우리나라의 학교복합화 1999년 서울 금호초를 대상으로 최초로 이루어졌으며, '21년 현재 전체 초·중·고의 1% 수준인 194건의 학교복합시설이 있음. 구체적으로는 체육관 91개소, 주차장 26개소, 도서관 5개소, 문화센터 4개소임(중앙교육연수원, 2022)
- 광주 고실중학교의 학교복합화를 구체적 사례로 제시하면, 고실중 신설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 중앙투·용자심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 강구를 조건으로 요구하여 교육청에서 광주광역시에 학교 복합화시설 건립을 제안하여 광주광역시에서 12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 광주교육청은 지자체의 자원 확보를 위해 실무 협의를 시청과 구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지역의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학교 복합화시설 설계 관련 의견 수렴 회의를 개최하였음
- 그 결과 주민참여실, 다목적강당, 체력단련실, 샤워/탈의실, 동아리실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하여 학교와 지역공동체의 연계를 강화하는 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 성과를 높이고 있음

나. 일본 사례

○ 일본의 동원소학교(近江八幡市立桐原小學校) 사례

- 일본에서는 기존 건물은 내진성능 부족으로 체육관을 제외하고는

철거하고 근처의 커뮤니티 센터 노후화에 따라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를 통합하여 배치하였음. 또한, 과거 홍수 발생 지역으로 주민을 위한 피난 장소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였음

- 학생수는 493명(급당 30명)으로 장애학급 4학급 20명(5명/급당)을 교직원 31명이며 지원 인력을 포함하면 40명 정도였음. 주요 건물은 학생 수용을 위한 고사동, 지역 주민참여를 위한 커뮤니티 센터, 방과후센터가 있었음
- 복합시설화 되면서 운동장은 지반을 낮추어 홍수 때 물을 담는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체육관은 재해발생 시 피난 시설로 활용가능하도록 하였음. 강당은 칸막이 개폐, 음악실과 연계하여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공간으로 활용하고 식당은 연2회 주민 초청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음. 도서관은 미디어 센터의 기능이 가지며, 주민에게 개방되고 자원봉사자가 관리하도록 하였음. 옥상에는 6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조성하여 비상 화재 시 소화전과 연결되어 소방차 도착 전 소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학교시설복합화 관련 주요 쟁점

○ 기능 측면

- 우리나라의 학교 복합화 시설은 주로 단일기능 위주로 설치되거나 국내 사례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체육관, 수영장 등을 포함하는 체육 시설과 주차장 부족 해소를 위한 공공시설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음
- 반면에, 외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시설,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 및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시설들은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 아울러, 복합화 시설을 추진하는 주체별로도 선호하는 시설에 차이가 있음.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학생교육을 위한 체육관, 수영장 등의 학습과 연계된 시설들을 선호하나 지자체는 지역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 기반시설인 주차장, 도서관 등을 확충하고자 함. 지역주민은 문화체육 시설이나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시설 등을 선호하므로 이러한 이해 관계를 적절히 반영한 방향으로 학교 복합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구도심 지역이나, 신도시 개발지역이나, 농촌지역이나 등에 따른 지역별로도 복합화 시설에 대한 선호가 상이한 실정이므로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반영하여 복합화를 추진할 것인가는 학교 복합화를 위한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학교 복합화를 통한 시설들이 지역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도서관, 체육관, 주차장 등에 집중되어 있는 복합화 기능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관리 및 운영 측면

- 복합화 시설의 성격에 따라 관리 및 예산 지원에 있어 관련 기관이 다르므로 시설 운영 시교육청 및 지자체 등 관련 기관간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갈등 상황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도서관이나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운영권, 개방대상 및 시간대, 적자 발생시 보전방법 등에 이견 대립으로 시설 개방이 미루어지거나, 수영장 등과 스포츠센터 이용 주체 및 개방에 대해 학생 우선이나, 지역주민 배려 확대나 등을 두고 교육청과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시행기관 간 협약 체결시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실제로 협약이 이루어졌더라도 협약사항 미이행에 따른 별도의 이행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임
- 또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실질적인 허가권자라고 할 수 있는 학교장 등이 사업추진 당시와 운영 시의 학교장이 상이하거나, 안전 등의 우려로 시설 이용에 대한 적극적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기본적으로 학교 복합화시설의 소유권은 학교부지 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자체가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부담하기로 할 경우 시설 소유권에 대한 교육청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함. 또한, 토지는 교육청이 소유하고, 시설은 지자체가 소유하도록 하는 구분지상권을 복합화시설에 설정할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이성룡 외, 2011)
- 이 과정에서 시설 운영권은 지자체에게 위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학습시설 및 일부 체육시설의 경우 학교장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일부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음. 이 외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면서 시행기관간 갈등을 줄여나가야 함

○ 사업비 부담 측면

- 학교시설 복합화는 사업의 성격상 민간의 참여가 어렵고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임
-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 시 대부분의 경우 지자체의 사업비

분담 금액이 높기 때문에 자자체의 협조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예전에는 지자체의 학교복합 시설에 대한 이해 및 예산 부족을 이유로 투자를 망설이고 있었으나,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에 따른 민선 단체장들의 공약 실현을 위해 관심이 증대하고 있어 복합화 사업 추진 시 사업비 분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수립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학교시설 복합화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므로 관련 기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추진해야 함. 특히, 사업비 분담은 시설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복합화 시설의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 확대 및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분담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법적 기반 강화 측면

- 그동안의 학교 복합화는 지역단위 수준의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약(MOU)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나 법적 기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약하고 학교운영시간 중 주민출입 제한 등에 대한 근거가 없어(유용상 외, 2020) 상대적으로 복합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음
- 개별 학교단위의 지원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은 창원시, 화성시, 시흥시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직접적인 조례는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연계한 생활SOC를 촉진하는 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학교 복합화 지원 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Ⅲ.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의 및 운영 현황 분석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의¹⁾

-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는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양한 교육재정 관련 법 중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17개 시·도의 초·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재정의 확보와 배분을 규정하고 있는 가장 포괄적인 법률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 목적은 제1조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하는데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일정 비율 및 국세 교육세로 확보되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명령으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있고, 기준재정수요액 측정기준 및 단위 등이 제시되어 있음
- 총13개 조항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조항을 간략히 제시하면, 제1조(목적), 제2조(정의) 기준재정 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측정단위, 단위비용,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제4조(교부율의 보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제5조의 2(특별교부금의 교부), 제6조(기준재정 수요액), 제7조(기준재정수입액), 제8조(교부금의 조정 등), 제9조(예산 계상), 제10조(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12조(보통교부금의 보고), 제13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부칙이 있음

1) 이 부분은 ‘송기창 외(2023). 2022 교육재정백서’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며,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97/100, 보통교부금은 3/100으로 확보함
-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수요, 지역교육현안수요 및 재해대책수요의 3가지로 구분하여 교부되고 있음
-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측정단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11.1.) 중 교육기관 등 시설비 관련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산정기준(전문은 <부록 1> 참조)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	건축연면적	교육부장관이 교육환경개선 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지, 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내 시설의 건축연면적
	나. 공립학교 신설·이전(移轉)·증설비	토지면적	중앙의뢰심사〔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 및 제41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의 의뢰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하는 투자심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의 표준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중앙의뢰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증설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실 수
	다. 공립 통합·운영학교 신설·이전비	토지면적	중앙의뢰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의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중앙의뢰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의 건축연면적
	라. 공립 유치원 신설·증설비	토지면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교사(校舍)를 신축하는 방식으로 신설하려는 단설(單設) 유치원의 표준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교사를 신축하는 방식으로 신설하려는 단설 유치원의 표준 건축연면적
		공유재산 전환형 건축연면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을 교지·교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신설하려는 단설 유치원의 표준 건축연면적
		증설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실 수
		전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치원의 교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실 수
		매입 대상 사립 유치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사립 유치원을 매입·전환하는 방식으로 단설 유치원을 신설하기 위해 매입하려는 사립 유치원의 수
	마.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증설·대수선비	토지면적	학교통폐합에 따른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 중 중앙의뢰심사를 거친 학교의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1)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 이전 및 개축 대상 학교 중 중앙의뢰심사를 거친 학교의 건축연면적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대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건축연면적	

바. 삭제 <2019. 2. 26.>		
사. 사립학교 이전·증설비	건축연면적	중앙의뢰심사를 거친 이전 대상 사립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및 이전 건축비를 정산한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증설 교실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실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증설 교실 수
아. 삭제 <2022. 11. 1.>		
자. 청사 신설·이전비	토지면적	투자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청사의 표준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투자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청사의 표준 건축연면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11.4.) 중 교육기관 등 시설비 관련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산정기준 및 단위비용 (전문은 <부록 2> 참조)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	건축연면적	1) 교육부장관이 교육환경개선 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지, 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내 시설의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2) 정산결과 남는 금액 3) 정산결과 부족한 금액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의 금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단위비용
	나. 공립학교 신설·이전(移轉)·증설비	토지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증설 교실 수	교실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다. 공립 통합·운영학교 신설·이전비	토지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토지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라. 공립 유치원 신설·증설비	토지면적	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공유재산 전환형 건축연면적	공유재산 전환형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증설 교실 수	교실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전환 교실 수	교실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매입 대상 사립 유치원 수	매입 대상 사립 유치원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립 유치원당 매입비
	마.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증설·대수선비	토지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토지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16 • 대학 시설 복합화 사업을 위한 기준 마련

바. 삭제 <2019. 2. 26.>			
사. 사립학교 이전·증설비	건축연면적	1)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 [기존 학교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 -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약 금액] 2)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증설 교실 수	교실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아. 삭제 <2022. 11. 4.>			
자. 청사 신설·이전비	토지면적	((교육청 청사 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 + (교육지원청 청사 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교육청 청사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 (교육지원청 청사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은 아래와 같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8.10.)

교부수요	교부기준·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1. 법 제5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사업 관련 특별교부금(국가시책사업수요)	<p>가. 교부기준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유아, 초·중등 및 특수 교육 관련 국가시책에 따라 정책분야 및 세부 사업의 사업계획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나. 교부대상 국가시책에 따른 다음의 정책사업(정책사업별 세부사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공교육 혁신 사업 2) 교육복지 지원 사업 3) 안전한 학교 지원 사업 4) 진로·직업교육 지원 사업 5) 교육행정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사업</p> <p>다. 교부방법 1) 교육부 실·국·과의 신청 사업에 대하여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결정·교부한다. 2) 교육부장관은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교육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결정된 사업에 관한 특별교부금의 경우 시·도의 교육청이 그 사업을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통하여 공동으로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p>
2. 법 제5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금 중 행정·재정 운용 우수 지방자치단체 지원 특별교부금(우수지자체지원 수요)	<p>가. 교부기준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교부할 수 있다.</p> <p>나. 교부대상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로 한다.</p> <p>다. 교부방법 교육부장관은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특별교부금을 결정·교부한다.</p>

교부수요	교부기준·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p>3. 법 제5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금(지역교육현안수요)</p>	<p>가. 교부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어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의 타당성, 적정성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지원한 학교에 관한 소요예산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강당 및 체육관(다목적교실을 포함한다) 신·증축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또는 기업체 등의 외부재원 대응투자(해당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교부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table border="1" data-bbox="523 660 1246 795"> <thead> <tr> <th>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th> <th>대응투자 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재정자립도 40% 이상</td> <td>30% 이상</td> </tr> <tr> <td>재정자립도 20% 이상 ~ 40% 미만</td> <td>20% 이상</td> </tr> <tr> <td>재정자립도 20% 미만</td> <td>10% 이상</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투자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아래 표에 따른 대응투자 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보조사업을 제한받는 시·군·구는 대응투자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이 대응투자를 하는 경우 20% 이상의 대응투자 비율을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그 외의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투자를 하는 경우 30% 이상의 대응투자 비율을 적용한다. <p>나. 교부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 강당·체육관(다목적교실을 포함한다), 도서관, 특별교실, 급식실 및 기숙사 등의 신·증축 지원 2) 학교 교육시설 개선 사업 바닥 및 천정 교체, 창문 및 출입문 교체, 냉난방시설 개선, 조명시설 개선, 외벽보수, 급식실 개선, 화장실 개선, 옥상 방수, 옹벽 보수 및 운동장 정비 등의 지원 3) 교육청·교육지원청 청사를 제외한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의 시설 관련 사업 연수원, 수련원, 정보원 및 과학교육원 등의 시설 신축·증축 및 개선 지원 4) 지역별·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교육 사업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 지역교육현안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다. 교부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교육감의 신청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시급성, 지역간 형평성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교부한다. 2)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투자심사를 거쳐 적정 또는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된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재원 대응투자가 확보(계획)된 사업의 경우에는 연도를 달리하여 2회 이상 교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대응투자 비율	재정자립도 40% 이상	30% 이상	재정자립도 20% 이상 ~ 40% 미만	20% 이상	재정자립도 20% 미만	10% 이상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대응투자 비율								
재정자립도 40% 이상	30% 이상								
재정자립도 20% 이상 ~ 40% 미만	20% 이상								
재정자립도 20% 미만	10% 이상								
<p>4. 법 제5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금(재해대책사업수요)</p>	<p>가. 교부기준</p> <p>태풍·홍수·폭설·지진·가뭄 또는 감염병 등 각종 재해(이하 “각종재해”라 한다)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긴급한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요구한 소요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나. 교부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종재해로 인한 학교시설 등의 보수 및 피해 복구사업 2) 각종재해로 인한 학교시설 등의 피해 예방사업 3) 각종재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송, 임시수용 사업 4) 각종재해로 인한 교육 일정 연기에 따른 불가피한 추가 교육 등의 사업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으로 인한 학생의 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6) 중앙대책본부가 학교시설 등에 대한 각종재해와 관련하여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7)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교시설 등에 대한 각종재해와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다. 교부방법</p> <p>시·도교육감이 재정지원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 사업의 적정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교부한다.</p>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현황

- 2014~202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운영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내국세분 교부금의 3%(2018년부터)와 교육세 재원(2017년부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제외함)을 합한 금액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은 재원 확보가 내국세와 교육세에 의존하기 때문에 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 또한 지방교육재정 관련 제도의 변화도 교부금의 급격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 교부금도 함께 증가하지만 경제성장률이 매우 낮았던 2020년에는 교부금의 증가율 또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7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도입되어 교육세분 교부금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됨에 따라 교부금의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음
 - 2022년 교부금 본예산은 65조 595억원이지만 추경 포함시 규모는 76조 450억원이었음. 2023년 교부금 예산은 2022년 본예산 65조 595억원에 비해 10조 7,011억원 증가한 75조 7,606억원임

<표 3> 연도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규모

(단위: 억원,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경제성장률	3.2	2.8	2.9	3.2	2.9	2.2	-0.7	4.1	2.6		
지방 교육 재 정 교 부 금	본예산	408,681	394,056	412,284	429,317	495,407	552,488	553,722	532,300	650,595	6.0%
	증감률		-3.6%	4.6%	4.1%	15.4%	11.5%	0.2%	-3.9%	22.2%	
	추경포함	408,681	394,056	431,615	447,185	495,407	552,488	535,112	595,958	760,450	8.1%
	증감률		-3.6%	9.5%	3.6%	10.8%	11.5%	-3.1%	11.4%	27.6%	
보통 교 부 금	본예산	394,117	380,185	397,841	412,992	481,569	536,823	538,114	517,416	632,180	6.1%
	증감률		-3.5%	4.6%	3.8%	16.6%	11.5%	0.2%	-3.8%	22.2%	
	추경포함	394,117	380,185	416,399	430,145	481,569	536,823	520,114	579,164	738,554	8.2%
	증감률		-3.5%	9.5%	3.3%	12.0%	11.5%	-3.1%	11.4%	27.5%	

출처: 교육부(각년도).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 자료 활용 저자 재구성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국민계정」. e-나라지표.
 송기창 외(2023). 2022 교육재정백서.

- 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 규모 변화는 <표 4>와 같음. 2016~2022년 보통교부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적으로 8.0%이었고, 세종을 제외한 경우 교육청의 연평균 증가율은 3.5~10.1%로 차이가 나타남. 충남교육청 10.1%, 충북교육청 9.6%, 경기교육청 9.1%로 보통교부금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서울교육청은 연평균 증가율이 3.5%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 규모 변화

(단위: 억원, %. 본예산기준 추경분 미포함)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서울	교부액	46,004	41,331	47,073	49,968	51,346	49,644	56,465	3.5%
	(증감률)		-10.2%	13.9%	6.2%	2.8%	-3.3%	13.7%	
부산	교부액	23,345	24,295	28,054	31,354	33,136	30,550	36,796	7.9%
	(증감률)		4.1%	15.5%	11.8%	5.7%	-7.8%	20.4%	
대구	교부액	18,240	19,558	22,342	24,864	26,197	24,061	29,837	8.5%
	(증감률)		7.2%	14.2%	11.3%	5.4%	-8.2%	24.0%	
인천	교부액	20,301	20,994	23,462	26,104	27,593	27,305	32,672	8.3%
	(증감률)		3.4%	11.8%	11.3%	5.7%	-1.0%	19.7%	
광주	교부액	12,535	12,958	14,877	16,777	16,341	16,012	19,552	7.7%
	(증감률)		3.4%	14.8%	12.8%	-2.6%	-2.0%	22.1%	
대전	교부액	11,804	12,498	14,117	16,120	16,777	15,863	19,204	8.4%
	(증감률)		5.9%	13.0%	14.2%	4.1%	-5.4%	21.1%	
울산	교부액	9,874	10,208	11,571	13,087	13,485	12,933	15,931	8.3%
	(증감률)		3.4%	13.4%	13.1%	3.0%	-4.1%	23.2%	
세종	교부액	2,218	4,582	6,390	8,833	6,562	6,865	8,548	25.2%
	(증감률)		106.5%	39.5%	38.2%	-25.7%	4.6%	24.5%	
경기	교부액	84,743	85,012	103,655	116,125	116,702	114,680	142,958	9.1%
	(증감률)		0.3%	21.9%	12.0%	0.5%	-1.7%	24.7%	
강원	교부액	18,658	20,325	23,415	26,263	25,664	24,578	29,918	8.2%
	(증감률)		8.9%	15.2%	12.2%	-2.3%	-4.2%	21.7%	
충북	교부액	15,656	17,401	20,320	22,914	21,978	20,913	27,161	9.6%
	(증감률)		11.1%	16.8%	12.8%	-4.1%	-4.8%	29.9%	
충남	교부액	20,762	23,031	26,086	28,387	29,123	29,227	37,062	10.1%
	(증감률)		10.9%	13.3%	8.8%	2.6%	0.4%	26.8%	
전북	교부액	21,575	22,390	27,713	30,067	29,783	28,698	33,759	7.7%
	(증감률)		3.8%	23.8%	8.5%	-0.9%	-3.6%	17.6%	
전남	교부액	24,750	26,395	30,368	33,684	32,708	30,381	37,765	7.3%
	(증감률)		6.6%	15.1%	10.9%	-2.9%	-7.1%	24.3%	
경북	교부액	29,390	31,680	35,094	39,239	38,959	36,290	44,629	7.2%
	(증감률)		7.8%	10.8%	11.8%	-0.7%	-6.9%	23.0%	
경남	교부액	31,736	33,841	39,330	44,603	43,311	41,294	49,999	7.9%
	(증감률)		6.6%	16.2%	13.4%	-2.9%	-4.7%	21.1%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체 주	교부액	6,250	6,493	7,702	8,434	8,448	8,123	9,925	8.0%
	(증감률)		3.9%	18.6%	9.5%	0.2%	-3.8%	22.2%	
계	교부액	397,841	412,992	481,569	536,823	538,114	517,416	632,180	8.0%
	(증감률)		3.8%	16.6%	11.5%	0.2%	-3.8%	22.2%	

출처: 교육부(각년도), 보통교부금 교부자료

- 2004~2022년까지 특별교부금 규모와 변화추이는 <표 5>와 같음.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총액 및 교부율 변화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음
- 특별교부금 총 규모는 2005년 대폭 감소된 반면 2008년부터는 연도별 차이는 있으나 내국세 증가와 교부율 상향 조정 등으로 특별교부금 총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다만 2015년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내국세 전체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특별교부금의 규모 역시 감소하였으며, 이후 2018년 배분비율이 기존 4%에서 3%로 축소하면서 특별교부금의 총규모는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으나 내국세 대비 일정 비율이 지방소비세율 등의 변화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여 20.79%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유지·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2004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증가와 감소가 반복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우상향하고 있으며, 2022년의 경우 내국세 교부금 규모의 증가로 특별교부금 규모 역시 크게 증가하였음

<표 5> 특별교부금 규모 추이(2004-2022)

(단위: 억원, %)

구분	특별교부금 규모					내국세 대비 특별교부금 비율
	계		국가시책	지역교육 현안	재해 대책	
	교부액	전년대비 증감율				
2004	11,278		4,511	4,480	2,287	13.0%의 1/11
2005	7,903	-29.9%	4,742	2,371	790	19.4%의 4/100
2006	8,237	4.2%	4,942	2,471	824	
2007	9,447	14.7%	5,668	2,834	945	
2008	11,699	23.8%	7,019	3,510	1,170	20.0%의 4/100
2009	10,429	-10.9%	6,257	3,129	1,043	
2010	11,370	9.0%	6,822	3,411	1,137	20.27%의 4/100
2011	12,273	7.9%	7,364	3,682	1,227	
2012	13,934	13.5%	8,361	4,180	1,393	
2013	14,514	4.2%	8,708	4,354	1,451	
2014	14,564	0.3%	8,738	4,369	1,456	
2015	13,870	-4.8%	8,322	4,161	1,387	
2016	15,216	9.7%	9,130	4,565	1,522	
2017	18,325	20.4%	10,822	5,720	1,783	20.27%의 3/100
2018	15,573	-15.0%	9,184	4,886	1,503	
2019	17,806	14.3%	10,623	5,452	1,730	20.46%의 3/100
2020	15,454	-13.2%	9,252	4,703	1,500	20.79%의 3/100
2021	18,035	16.7%	10,868	5,436	1,732	
2022	24,463	35.6%	14,589	7,448	2,426	
연평균 증가율	4.4%		6.7%	2.9%	0.3%	

출처: 2004~2012년 송기창 외(2018), 2013~2021 지방교육재정알리미(2023.1.27. 인출) 송기창 외(2023). 2022 지방교육재정백서.

- 특별교부금 시도교육청별 규모 추이를 2015~2022년까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해당 시기에 특별교부금 총 규모는 연평균 8.4% 증가하였는데, 평균 보다 높게 증가율을 보이는 지역은 경기교육청(12.9%), 광주교육청(10.9%), 강원교육청(9.4%), 충남교육청(9.3%), 서울교육청(8.6%) 등이었음. 반면 제주교육청(3.5%), 전남교육청(3.8%), 세종교육청(3.9%)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특별교부금 총규모는 시도교육청별 편차가 크다고 할 수 있음(<표 6> 참조)

<표 6> 특별교부금 시·도교육청별 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서울	154,974	155,544	210,866	189,758	242,573	199,092	221,951	276,718	8.6%
부산	87,797	103,342	96,082	94,936	100,767	89,622	102,510	139,099	6.8%
대구	93,235	99,516	94,273	78,274	81,647	74,205	88,923	149,322	7.0%
인천	87,484	81,098	92,476	80,373	101,706	84,534	98,961	144,599	7.4%
광주	46,994	48,390	58,723	50,434	62,646	53,319	58,876	96,881	10.9%
대전	62,243	62,364	61,995	52,888	70,500	50,977	63,991	89,047	5.2%
울산	45,321	67,092	54,766	45,457	48,529	39,726	38,594	65,982	5.5%
세종	21,312	19,520	28,687	31,172	20,729	21,576	20,322	27,856	3.9%
경기	242,276	243,038	325,403	317,853	367,941	356,013	423,904	567,511	12.9%
강원	58,189	65,622	115,013	74,062	82,732	67,210	82,445	109,230	9.4%
충북	63,027	72,845	67,375	63,871	69,255	61,560	74,206	91,707	5.5%
충남	68,038	75,902	95,449	82,393	90,998	76,956	96,292	126,408	9.3%
전북	58,278	61,849	79,759	69,830	79,928	63,810	77,730	102,479	8.4%
전남	84,406	90,305	141,473	92,640	100,510	83,753	94,883	109,221	3.8%
경북	87,508	116,831	147,529	100,312	108,757	86,156	104,738	149,536	8.0%
경남	95,154	122,012	118,278	104,268	116,033	110,577	120,232	161,480	7.8%
제주	30,788	36,324	44,334	28,753	35,359	26,350	34,990	39,241	3.5%
계	1,387,024	1,521,593	1,832,480	1,557,274	1,780,608	1,545,436	1,803,549	2,446,319	8.4%

주: 연도별 시·도교육청별 금액은 국가시책, 지역교육현안,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총액을 의미함

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2023.1.27. 인출), 송기창 외(2023). 2022 지방교육재정백서.

IV.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연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상 운용 구조

1.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운용 구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시설사업 관련 재원은 보통교부금의 ‘교육기관 등 시설비’ 및 특별교부금의 ‘지역현안수요사업’ 등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같이 국고보조, BTL 등의 재원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시설비는 교부금으로 확보하고 있음
 - 시·도교육청은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시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학교복합시설을 포함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시도교육청 등)은 시설비를 포함한 재정투자사업을 진행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함²⁾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은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중복 및 과잉투자 방지를 위하여 ‘10년부터 도입한 제도임
 -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해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과정을 두고 있음. 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계획성·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 전에 투자심사를 실시

2) ‘교육부(2021).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의 주요 내용을 참고로 정리함

하여 재정낭비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특히,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과 연계한 계획 재정 운영을 유도하고 있으며,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림 1] 재정투자사업 추진 절차

※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며, 투자심사 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 수정 필요

- 단,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 반영 조건으로 추진 가능

* 국가정책사업의 계획변경 또는 연도 말에 긴급히 결정된 사업,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된 사업, 투자심사의뢰와 동시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자체심사 한정) 등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은 ‘교육청-지자체 공동투자사업’ 추진 시 중앙투자심사를 간소화하도록 하고 있음
 - 생활SOC사업 활성화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등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교육부-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간소화 추진
 - 지방비 재원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 등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교육부-행안부 공동 수행
- 투자심사대상은 다음과 같음
 - 세출예산 구조상 세부사업의 사업예산에 해당되는 투자성 사업 · 행사성 사업 및 현물이 출자(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 총사업비에는 용지비*, 보상비, 설계비, 입찰공고비, 시설부대경비, 장비구축·구입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 포함

* 용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비용을 적용하고, 매입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공시지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시지가가 없을 시 표준지공시지가 적용 (임대료는 해당 없음)

** 공공시설물 중 시설 운영을 위해 준공(개교) 이전에 구입이 필요하다고 계획한 물품(예: 학교의 책걸상 등 기본물품)도 포함

- 지자체(시·도교육청 포함) 및 민간이 재원을 부담하거나 시·도교육청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

※ 학교내 부지에 단순 부속시설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 중 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신축, 증·개축의 경우* 해당 용지비를 총사업비에서 제외

* 단, 교실(특별교실 포함)을 포함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에는 해당 면적에 대한 용지비를 총사업비에 포함

※ 사용중인 건물에 대한 개축, 수직증축, 대수선의 경우 용지비를 미포함하고, 건축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을 증가하여 증·개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이 점유한 면적을 제외한 증가하는 건축면적에 대해서만 용지비 포함

※ 기존 학교부지 내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복합시설이 점유한 면적에 대한 용지비를 포함

- 시설물 건축 등에 대한 예산지출 없이 단순 폐교재산의 대부분인해 일반자치단체 등의 재정사업 상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경우, 투자심사 대상이 아님

○ 심사기관별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자체심사)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심사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으로서 외국

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행사성 사업

* (중앙의뢰심사) 자체심사에서 적정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된 사업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에 의뢰하는 심사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속기관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이하 “직속기관등“이라 한다) 시설의 신축·개축 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려는 사업
나) 해당 직속기관등에 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외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설치 근거가 없는 사업
- 2)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시설의 신축·개축 사업
-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 시설의 신축·개축 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포함하려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공립학교 신설·이전 사업, 같은 호 다목의 개발지구 내 공립 통합·운영학교 신설·이전 사업 및 같은 호 마목의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 사업
- 2)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청사의 신축·개축 사업
- 3) 「교육공무원법」 제39조에 따른 연수기관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시설의 신축·개축 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행사성 사업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교육부-행안부 공동투자심사) 자체심사에서 적정·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된 사업으로서 학교복합시설 등 교육청과 지자체 재원이 모두 투입되는 시설 사업*

* 교육부, 행정안전부 모두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인 경우

○ 투자심사 절차는 아래와 같음

- ① 투자심사지침 시달(투자심사부서→사업주관부서) → ②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반영(사업주관부서) → ③ 사업계획수립, 기초심사자료 제출(사업주관부서) → ④ 타당성조사의뢰(사업주관부서→타당성조사전문기관) → ⑤ 타당성조사결과 통보(타당성조사전문기관→사업주관부서) → ⑥ 투자심사요구(사업주관부서→투자심사부서) → ⑦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반영여부 확인(투자심사부서) → ⑧ 실무심사(투자심사부서) → ⑨ 투자심사(투자심사위원회) → ⑩ 투자심사결과통보(투자심사부서→사업주관부서) → ⑪ 투자사업 결정(시·도교육감)

2.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운용 구조

- 교육부(2023)의 학교시설복합화 활성화방안에 제시된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음



[그림 3] 학교복합시설 추진방향

- 특히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초·중등학교만 지원하던 학교복합시설을 대학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맞춤형 복합시설 지원을 통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도 지역특화형 학교복합시설에 포함하고 있음
 - 지역연계형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되, 지역대학의 인적·물적역량을 활용하여 청년 취·창업 지원시설 및 주민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조성하여 지역 거점화함
 - (예시) 대학시설 및 행복기숙사와 연계하여 문화·체육·복지시설 및 청년취·창업 지원시설 설치 시 효율극대화

〈 대학 활용 사례 〉

• (서울 혁신파크) 대학부지를 활용해 민관협력으로 산학캠퍼스 조성
 ※ 창업지원센터, 기숙사, 컨벤션센터, 복합 문화시설, 숙박시설 등

- 재정지원을 통한 지자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에 대한 행·재정지원을 강화함
 - 학교복합시설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자체 투입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되,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을 고려, 차등 지원 추진
 - ※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의 참여 유도를 위하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지원 규모 확대

[공모사업 유형별 지원규모(안)]

재정자립도	사업비 지원*	비고
20% 미만	30%	※ 늘봄학교와 연계한 경우 10% 가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우선·추가 지원 가능
20% 이상 - 40% 미만	25%	
40% 이상	20%	

*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 지원

- 지자체의 참여 유도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을 검토함

- ※ 교육 수요에 부합하는 학교복합시설이 되도록 교육활동에 활용되는 비율 등에 따라, 관리·운영비를 차등 지원 검토
- ※ 「학교복합시설법」 개정 추진

○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소외지역 해소에 기여함

- 대학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 지역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거점화

- ※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여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글로벌대학에 학교복합시설을 우선 조성** 검토

- 사립대학 해산 시 해당 교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매입하여 학교복합시설 대상 부지로 활용

- ※ 학교법인 해산 당시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22.9.)

○ 학교시설복합화 지원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할 것을 검토함

- 5년간 총사업비인 총1조 8,000억원(3,600억원/년 × 5년)* 중 30%가 해당됨. 5년간 지자체와 교육청의 공동신청을 받아 지역별 현안에 맞는 개별 사업을 연간 40교씩 선정·지원함

- ※ $[40교 \times (250 \sim 350\text{억원}) \times 30\%] \times 5년 = 18,000\text{억원}$

- * 지역여건 및 사업기획 방향 등을 고려, 교당 90억원(=300억원×30%) 반영

- 사업유형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지원도 검토함

- 사업지원을 위하여 선정된 사업은 선정된 사업은 총사업비 및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받아 추진

- ※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으로 관리·운영비 전출(교육청→지자체) 근거 마련 예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청(지자체)으로 총액을 일시에 지원하여 초기 사업기획 및 협약 등 사업의 마중물 용도로 활용하도록 함
- (예시) 총사업비 300억으로서 수영장(150억), 주차장(100억), 돌봄 등 교육시설(50억)을 포함하는 사례

기존		→	개선	
교육부	-		교육부	90억(300x30%)
문체부	30억(수영장)		문체부	30억(수영장)
대학	50억(교육시설)+부지제공		대학	50억(교육시설)+부지제공
지자체	220억(수영장, 주차장)		지자체	130억(수영장,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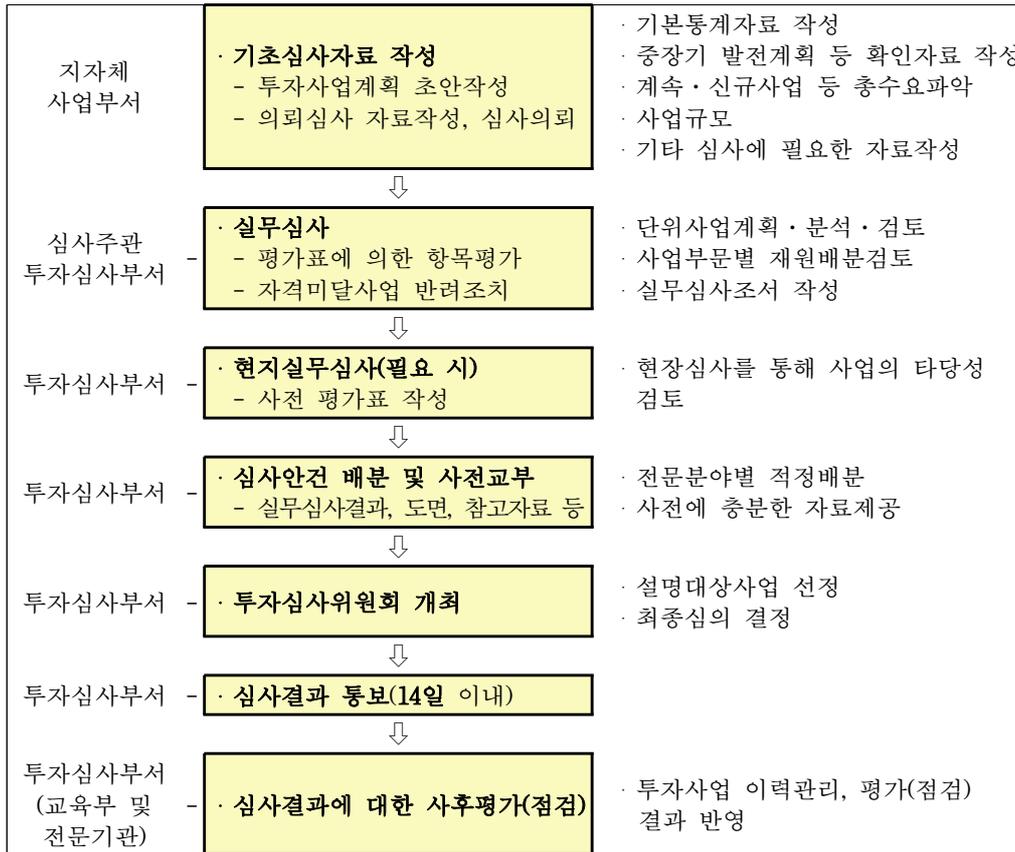
[그림 4] 학교복합시설 사업비 지원(예시)

- 사업 조기 정착을 위하여 교육부 및 전문지원기관에서 수요조사, 사업기획, 학교-지자체 업무협약 등을 패키지로 지원
 - ※ 한국교육개발원(유·초·중·고), 한국사학진흥재단(대학)
-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모사업 추진 단계별, 주체별 역할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그림 5] 학교복합시설 추진체계별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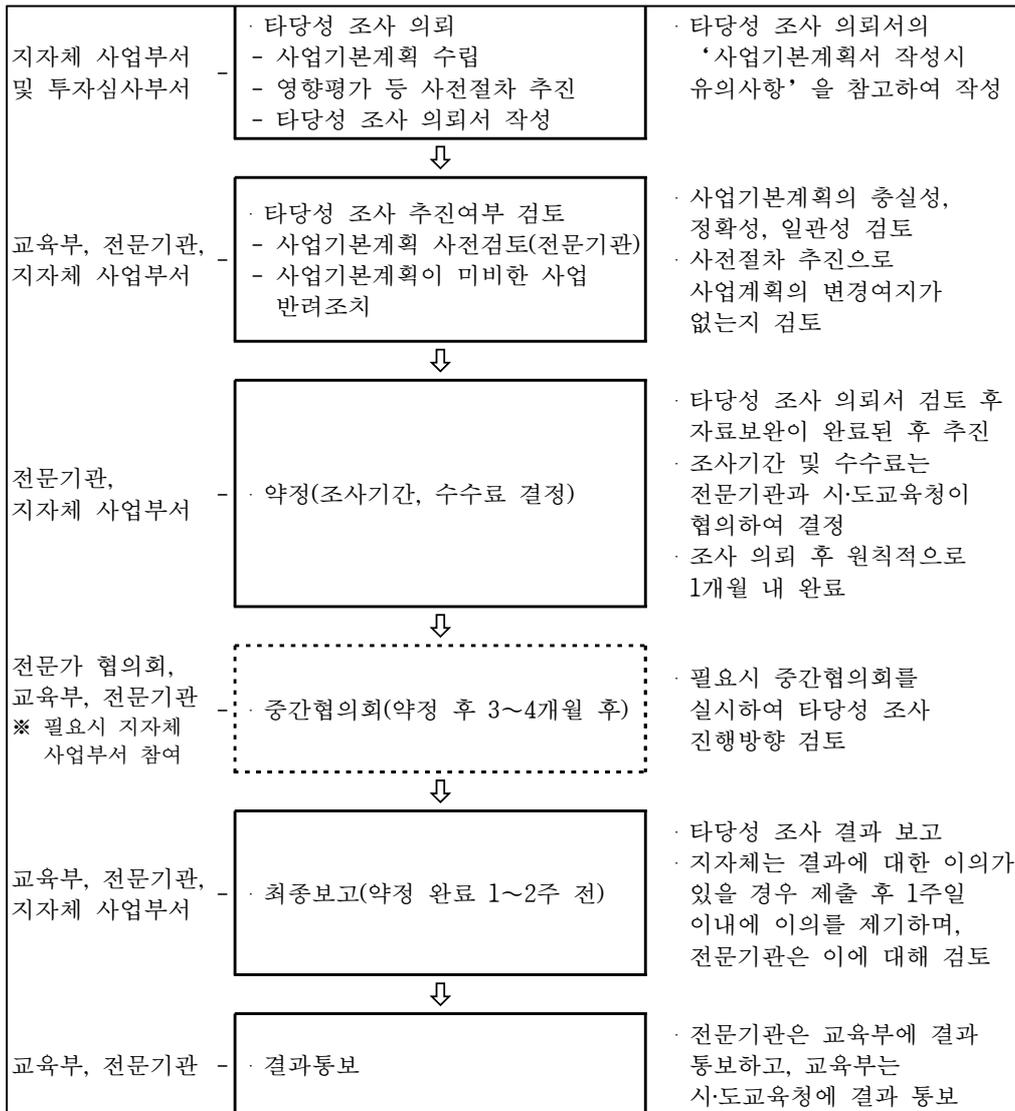
○ 보다 구체적으로, 투자심사단계별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음



[그림 6] 투자심사 단계별 조치사항

- 단,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투자심사 시 제출해야 함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타당성 조사는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객관성·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분석하는 절차임
 - 타당성 조사는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이며, 투자심사의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하는 참고자료로서 기능함

- 타당성 조사는 시급성, 필요성, 재원조달능력 등 투자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심사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
- 타당성 조사는 투자심사 추진을 전제로 실시하는 것임.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및 반영여부를 제출해야 함
-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 타당성조사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심사 대상 신규 사업이며,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 조사에서는 제외됨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타당성 조사 사업에서 제외됨
 - ※ 유·초·중등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 등으로 사업목적, 대상 및 사업내용이 표준화되어 타당성 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 ※ 다만, 정형화된 유·초·중등 교육시설 이외에 다른 시설을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의 대상에 포함
- 타당성조사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7] 타당성조사 절차

- 타당성 조사는 시·도교육청이 마련한 사업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계획의 검토, 대안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분석함.
- 사업계획서 검토→경제성 분석→재무성 분석→정책적 타당성 분석
→종합평가의 절차로 이루어짐

- 학교시설복합화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는 지자체 여건 및 사업성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함

· 사업계획 적정성 및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 학교설립 적정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자료 분석 ■ 학생배치 계획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학생수 현황 조사 - 학생수 추정 검토 - 분산배치 가능 여부 검토 ■ 사업부지 적정성 관련 법률검토, 입지분석
· 비용추정 및 적정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규모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별, 영역별 면적 구성 - 유사사례 ■ 총사업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비, 부지비, 시설부대 경비 ■ 운영비, 조직/인력 구성
·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전제 - 기초자료 및 수요추정 분석 - 비용 및 수입 산정 ■ 경제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전제 - 편익추정/비용추정
· 정책적 타당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일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계획 정책방향 일치성 -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 사업준비 정도 ■ 위험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조달 가능성 ■ 효과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적 가치 - 지역발전 가치

[그림 8] 타당성조사 범위 및 분석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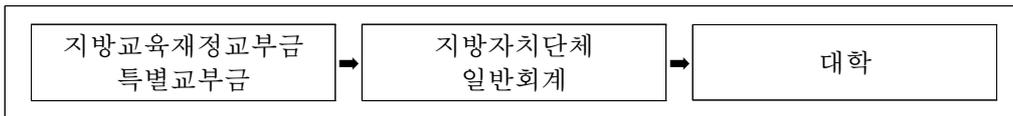
- 타당성조사 역시 교육부-행안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교육부와 행안부 공동으로 조사를 수행함
- 교육부 전문기관은 학교시설 복합화 계획 및 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을 검토, 행안부 전문기관은 복합시설에 대한 타당성 및 운영수지 등을 분석하여 하나의 보고서로 작성함
- 일반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지방교육재정연구원 및 지방행정연구원으로 의뢰·약정하여 별도 진행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각 부처별 타당성조사 절차에 준하여 운영함

3.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연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상 운용 구조

- 앞서 제시한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자체(대학)에도 지원하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개편을 제시하고 있음
-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관련 법 제1조(목적)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원’ 이므로 국가가 고등교육기관 등 타기관 및 지자체로 직접 진출하지는 못함
 -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추진시 현행 법령 하에서 가능한 운용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단, 학교시설복합법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원 근거를 명시하도록 개정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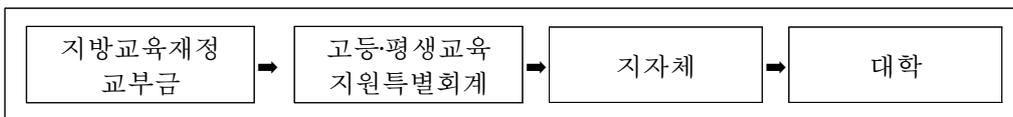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상 운용 절차

○ (1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을 국가가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므로 직접 지자체로 전출하지 못함
- 시·도교육청에서도 위탁사업, 보조사업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대학으로 직접 전출하지 못함
- 따라서 국가에서는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수요 또는 지역교육현안사업의 일부로 재원을 확보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로 교부하는 방안이 가능함
- 교육부장관은 해당연도 학교시설복합화 규모를 산정하고,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함

○ (2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정 규모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2항의2에 의하면, 해당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연구역량 강화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5조. 세출) 지자체로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음

- 이러한 구조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은 해당연도 학교시설복합화 규모를 산정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그 규모만큼을 지자체로 교부할 수 있음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추가 재원은 국고보조사업, 타부처사업, 지자체 자체투자사업 등과 연계하여 대학에 대한 학교시설복합화를 추진할 수 있음

나. 참여주체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근거 및 예상 운용 방안

○ 국가(교육부)는 학교시설 복합화 대상으로 대학이 추가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데 따른 법령을 개정하고, 학교복합시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함

- 학교복합시설 관련하여 개정 필요성을 검토가능한 법규는, 사립학교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평생교육법,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이 있음
-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평가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별 사업단위로 평가하여 총점이 높은 순서로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할 수 있음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교육부와 행안부 공동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타당성조사 등을 실시한 후, 공동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가 MOU를 맺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보한 후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대학에 대한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해야 함
 - 지자체는 감독기관 등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중장기발전계획에 해당 자치단체 내 대학에 대한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 및 규모(산정), 배치 및 공간 활용 계획, 시설 관리·운영계획,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청서를 제출함
 - 지자체 내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 및 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각 학교에 설치함
 - ※ 총규모가 클 경우 타당성조사 등을 전문기관과 함께 실시하여 투자심사 시 첨부서류로 제출함
 - 지자체는 교육부에 사업의향서를 작성 제출하고, 대학과의 협약서(MOU)* 등을 체결함
 - ※ (예시) 00대학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협약, 00대학 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실시 협약, 00대학 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약
 -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하여 대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직접 시설관련 업체를 선정하고 대학에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조례 제·개정, 재원확보, 사업운용지침 등을 실시하여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해야 함

- 다만,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이후 운영비 마련 및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대학과 함께 재원 분담 계획을 수립해야 함
 - 학교복합시설 추진 이후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비 부담의 적절성, 효율성, 책무성 달성 등을 점검함
- 대학은 학교시설 복합화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추진해야 함
- 대학은 자체적으로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학교시설복합화 계획을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해야 함
 - 대학은 지자체 지원을 포함한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학교시설복합화 후 적절한 유지, 관리 등의 관리주체 역할을 담당해야 함
 - 학교시설 복합화 이후 관리,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재원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업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V.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 2000년 서울 금호초등학교 개축사업에 처음 적용된 학교복합시설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초중고의 2%에도 못 미치는 실정임
- 이에 교육부는 학교에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2023년 핵심 교육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 법 적용대상에 유치원과 대학을 추가하고, 복합시설의 용도를 사회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며, 학교복합시설 사용을 위한 지역주민의 학교 출입이 빈번해짐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학교 교직원의 우려를 덜어주고자 함
- 또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 확산을 위한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당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 법 적용대상에 유치원과 대학을 포함함(제2조제1호)
- 나. 복합시설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사회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토록 함(제2조제3호)

- 다. 도시·군관리계획과 연계시켜 도시계획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
(제5조의2 신설)
- 라. 학교복합시설 사용을 위한 지역주민의 학교 출입이 빈번해짐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에 따른 학교 교직원의 우려를 덜어 주고 교육시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및 학교·학생의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신설)
- 마.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 확산을 위한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당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제10조의2 신설)

3. 일부개정 법률안 및 개정 사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 개정사유: 학교의 범위에 유아교육 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함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독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기관

나. 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

다. 제1호다목에 따른 학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

1)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
하는 국립학교: 총장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

3)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

3.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 또는 폐교(「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 교육, 문화, 복지, 체육 등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 등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 개정사유: 학교복합시설의 범위, 범위에 따른 감독기관, 학교복합
시설의 설치 가능 용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5조제1항제1호 중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중등
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

다)”을 “감독기관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감독기관의 장”을 각각 “감독기관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를 “감독기관 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그 밖”을 “제1항에서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로 한다.

☞ **개정사유: 감독기관의 장을 감독기관 등으로 변경하여 앞의 조문과 문구를 일치시킴**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도시·군관리계획 의제) ① 제5조에 따라 설치되는 학교복합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본다.

②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학교복합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사유: 학교복합시설과 도시·군 관리계획의 연계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제5조의3(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사유: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역할과 관여 등의 근거를 마련함

제6조제1항 단서 중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를 “감독기관 등이 협의하여 운영·관리하는 자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복합시설을” 을 “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로, “자는” 을 “자(이하 “운영·관리자” 라 한다)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 를 각각 “운영·관리자” 로 하고, 같은 항 중 “전문기관” 을 “전문기관(이하 “위탁기관” 이라 한다.)”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탁기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와 같은 법 제5조 및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조문개정(안)에 따라 필요한 자구수정을 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위탁기관에 대한 배상근거를 마련함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면책)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아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기관, 단체에 특혜를 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사유: 학교복합시설 관련 교직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근거를 마련함

제8조제2항 중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운영·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운영·관리자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장소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⑤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개정사유: 학생의 안전확보를 위한 운영관리자의 역할, 교육부의 역할 등을 명시적으로 제시함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 교육부 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개정사유: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임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p> <p><신 설></p> <p>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p>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p> <p>나.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p> <p>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평생교육시설</p> <p>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p> <p><신 설></p>	<p>제2조(정의) ----- -----.</p> <p>1.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p> <p>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p> <p>2. “감독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p> <p>가. 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기관</p> <p>나. 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p> <p>다. 제1호다목에 따른 학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p> <p>1)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총장</p> <p>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p> <p>3)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p> <p><삭 제></p> <p>3.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 또는 폐교(「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 교육, 문화, 복지, 체육 등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 등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p>
<p>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1.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p> <p>2. 감독기관의 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p>	<p>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 -----.</p> <p>1. 감독기관 등----- ----- -----</p> <p>2. 감독기관 등----- -----</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감독기관의 장은</u>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 감독기관 등 ----- ----- -----</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기획, 설계 및 공사 등의 건축은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u>감독기관의 장이</u>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③ ----- 감독기관 등 ----- 감독기관 등 -----</p>
<p>④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u>감독기관의 장이</u>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p>	<p>④ ----- 감독기관 등이 -----</p>
<p>⑤ (생략)</p> <p>⑥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1항에서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p>
<p><신설></p> <p>제5조의2(도시·군관리계획 의제) ① 제5조에 따라 설치되는 학교복합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본다.</p> <p>②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학교복합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p> <p>제5조의3(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교육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p>	<p>제5조의2(도시·군관리계획 의제) ① 제5조에 따라 설치되는 학교복합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본다.</p> <p>②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학교복합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p> <p>제5조의3(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교육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p>
<p>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u>감독기관의 장이</u>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p>	<p>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 ① ----- ----- ----- 감독기관 등이 협의하여 운영·관리하는 자를 -----</p>
<p>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는 -----</p>
<p>③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p>	<p>③ 운영·관리자 -----</p>

<p>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 -----.</p>
<p>④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운영·관리자----- ----- ----- 전문기관 (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p>
<p><신 설></p>	<p>⑤ 위탁기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와 같은 법 제5조 및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p>
<p>⑤ (생략) <신 설></p>	<p>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6조의2(면책)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아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기관, 단체에 특혜를 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① (생략)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p>	<p>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관리자----- -----.</p>
<p><신 설></p>	<p>③ 운영·관리자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p>
<p><신 설></p>	<p>④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장소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⑤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p>
<p><신 설></p>	<p>제10조의2(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 교육부 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p>

5.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 전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안)

(약칭: 학교복합시설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감독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 가. 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기관
 - 나. 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
 - 다. 제1호다목에 따른 학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
 - 1)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총장
 -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3)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

3.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 또는 폐교(「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 교육, 문화, 복지, 체육 등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 등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및 고등교육법을 준용한다.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감독기관 등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감독기관 등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등이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기획, 설계 및 공사 등의 건축은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 등 또는 학교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과 감독기관 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 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다.
 - ⑥ 제1항에서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도시·군관리계획 의제) ① 제5조에 따라 설치되는 학교복합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본다.

- ②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학교복합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 등이 협의하여 운영·관리하는 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③ 운영·관리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운영·관리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위탁기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와 같은 법 제5조 및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면책)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아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기관, 단체에 특혜를 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 및 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 라 한다)를 각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① 학교복합시설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학생과 지역주민 등 학교복합시설 이용자 간의 동선이 분리되는 등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운영·관리자는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③ 운영·관리자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장소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9조(전문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

기관을 지정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사·분석, 연구·자문,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의 장(교육부장관은 제외한다) 또는 학교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의2(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 교육부 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___월(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Ⅶ.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주체별 검토사항 제언

1. 법령의 검토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게 되면 개정의 내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법령이 존재함
 - 물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및 고등교육법을 준용한다” 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의 문제는 없으나 검토의 필요성은 존재함
-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새롭게 추가된 법령이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학교의 범위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제시되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에서 유치원(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과 대학(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유아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서 말하고 있는 학교가 포함됨
 - 유아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추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는 않음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조(목적), 제3조(적용범위)에 제시된 사업 대상에 대해 유치원과 고등교육기관이 포함된 개정이 필요함

-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조 기준, 항목, 결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려고 함
 - 지방자치단체에게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조 기준, 항목, 결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작업이 필요함

2. 조례와 규칙의 검토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와 지방교육청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조례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면 관련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예시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음

<p>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문화 및 복지 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 시설 등을 말한다.</p>
<p>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은 시장 및 구청장과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설치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p>
<p>제6조(기능)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 및 주민의 정서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2.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3. 도서의 열람·대출 및 학생·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신장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5.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6.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7조(학교복합시설의 귀속 및 설치 협의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교육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p> <p>②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교육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자원, 공사기간 등 설치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 3.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p>③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전에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8조(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 ① 학교복합시설의 건축설계를 하는 경우에 학생 사용시설과 주민 이용시설의 출입구 및 이동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학교복합시설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범죄예방 기준 충족을 충족하여야 하고, 범죄예방디자인 기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p> <p>③ 학생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각종 안전장치를</p>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개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교교육 및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 학교 교과 시간에는 학생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개방하고자 하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3. 그 밖에 주민의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별 개방시간, 학생의 우선 사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12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위탁)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주체로 결정된 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위탁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 또는 자치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 또는 자치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문화·체육·복지·교육 분야에서 운영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11조(기관 간 협의) ① 교육감과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차지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시 또는 자치구,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 라 한다)를 해당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에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설치 및 기능)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다.

1. 학생과 주민의 정서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2.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4.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치) 학교복합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개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생 및 지역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 교과시간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제17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학교복합시설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9시부터 21시까지
2. 토·일요일, 공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③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등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등

제6조(사용승인) ① 학교복합시설의 개방시간에 해당 시설을 사용(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학교의 교과시간 내 사용
2. 제17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였거나, 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주관의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승인 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해당학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승인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학교복합시설에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의 설치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기간이 종료되면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하고,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주민의 교양, 능력개발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 ①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승인 신청자는 사용승인 신청시에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제11조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신청자는 수강자 확정 후 고지된 납부기한 내에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설비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초과 사용료) 제6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에 2할을 가산한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4조(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제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납부액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시설 사용 전에 사용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 20일 전까지: 사용료 등 전부
2. 10일 전까지: 사용료 등의 100분의 80
3. 1일 전까지: 사용료 등의 100분의 50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외의 사유로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및 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문화·체육·복지·교육 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제16조(운영지원)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용방법·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학교복합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 교사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지역(해당 읍·면·동을 말한다) 주민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1조(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1조의2(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교복합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22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수강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부터 적용한다.

<p>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신청서)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화시설을 사용(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에게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서식과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규칙은 공포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대학의 역할 재정립 내용 검토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유치원과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경우 유치원과 대학의 역할 재정립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특히, 대학에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될 경우 복합시설물에 대한 설치, 운영·관리 역할을 대학이 수행하여야 하는바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함
 - 즉 관련 규정 및 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설치, 운영·관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운영·관리를 위한 기구의 설치(기존 부서의 업무분장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구 신설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액, 교육부 등 교육관련 기관의 재정지원액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재정체계와 연계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이외에도 대학은 복합시설물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학교, 지방자치단체, 교육부(지방교육청), 주민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있음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8).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설명회 자료.
- 교육부(2023).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방안.
- 교육부(2021).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3). 2023 학교복합시설 가이드라인.
- 송기창 외(2023). 2022 지방교육재정백서.
- 오병욱 외(2009). 학교시설복합화 실행모델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오세희(2023).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지역교육 협력의 이해. 교육과학사.
- 유웅상 외(2020). 생활SOC 사업과 연계한 미래학교시설 복합화 개선 방안. 미래교육환경학회.
- 이성룡 외(2011).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중앙교육연수원(2022).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 고급관리자과정 5분임. 미간행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교육부령)

<부록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1.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1. 교직원 인건비	교원 수	전년도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공립·사립 중학교, 공립·사립 고등학교, 공립·사립 특수학교 및 공립·사립 대안학교(이하 “교부금산정 기준학교”라 한다) 소속의 교원 수	
	교원 증원 수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교부연도의 공립학교의 교원 증원 수	
	교육전문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전문직원 수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 수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명예퇴직 교원 수	교육부장관이 교원수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원 수	
	명예퇴직 교육전문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육전문직원 수	
명예퇴직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2. 학교운영비	가. 학교경비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수 2)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 수	
	나. 학급경비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급 수 2)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의 학급 수	
	다. 학생경비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라. 삭제 <2020. 10. 20.>		
	마. 교과교실 운영비	학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여 교과교실제도를 운영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
		중설 교과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과교실 수
		교과교실 전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과교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실 수
	바. 삭제 <2020. 10. 20.>		
	사. 추가 운영비	학교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중 추가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학교 수
	아. 삭제 <2019. 2. 26.>		
자. 삭제 <2019. 2. 26.>			
차. 삭제 <2019. 2. 26.>			
3. 교육행정비	가. 기관운영비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교 수 및 학생 수 2)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기준 교직원 수	
	나. 지방선거경비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 관리 경비 및 해당 경비를 정산한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72 • 대학 시설 복합화 사업을 위한 기준 마련

4. 교육 복지 지원비	가. 지역 간 균형교육비	학교 수, 소재 행정구역 면적, 도서·벽지 소재 학교의 학생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수 2)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면적 3)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한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나. 계층 간 균형교육비	학생 수, 수급자 수,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수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수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차상위계층 학생 수 5)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학생 수 6)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
		정보화 지원 수급자 수	수급자 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수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와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선발하여야 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5. 교육 기관 등 시설비	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	건축연면적	교육부장관이 교육환경개선 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지, 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내 시설의 건축연면적
	나. 공립학교 신설·이전(移轉)·증설비	토지면적	중앙의뢰심사(「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 및 제41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의 의뢰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하는 투자심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의 표준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중앙의뢰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증설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실 수
	다. 공립 통합·운영학교 신설·이전비	토지면적	중앙의뢰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의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중앙의뢰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의 건축연면적
	라. 공립 유치원 신설·증설비	토지면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교사(校舍)를 신축하는 방식으로 신설하려는 단설(單設) 유치원의 표준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교사를 신축하는 방식으로 신설하려는 단설 유치원의 표준 건축연면적
		공유재산 전환형 건축연면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을 교지·교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신설하려는 단설 유치원의 표준 건축연면적
		증설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실 수
		전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치원의 교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실 수
		매입 대상 사립 유치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사립 유치원을 매입·전환하는 방식으로 단설 유치원을 신설하기 위해 매입하려는 사립 유치원의 수
마.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증설·대수선비	토지면적	학교통폐합에 따른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 중 중앙의뢰심사를 거친 학교의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1)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 이전 및 개축 대상 학교 중 중앙의뢰심사를 거친 학교의 건축연면적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대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건축연면적	

	바. 삭제 <2019. 2. 26.>		
	사. 사립학교 이전·증설비	건축연면적	중앙의뢰심사를 거친 이전 대상 사립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및 이전 건축비를 정산한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증설 교실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실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증설 교실 수
	아. 삭제 <2022. 11. 1.>		
	자. 청사 신설·이전비	토지면적	투자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청사의 표준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투자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청사의 표준 건축연면적
6. 유아교육비	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유아 수	1)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공통 교육·보육 과정을 제공받는 만 3세 이상의 유아 수 2) 보육료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나.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교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교원 수
	다.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유치원 수 및 원아 수	1) 공립·사립 유치원 수 2) 공립·사립 유치원의 원아 수
	라. 삭제 <2015.10.20.>		
7. 방과후학교 사업비	가. 방과후학교 사업지원	학급 수	1) 읍·면 지역 및 도서(島嶼)·벽지(僻地)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2) 대도시 및 시 지역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나. 자유수강권 지원	수급자 수	수급자 수
	다. 초등 돌봄 지원	학급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여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에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급 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초등 돌봄교실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실 수	
8. 교무상 교육지원	가. 입학금·수업료	학생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나. 학교운영지원비	학생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다. 교과용 도서 구입비	학생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9. 재정결합보전	가. 지방채상환	원리금상환액	교육부장관이 원리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원금상환액 및 이자액
	나. 민자사업 지급금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교육부장관이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임대료
	다. 재정안정화 지원	지원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

비고

1. 다음 각 목의 사립학교는 교부금산정기준학교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가. 삭제 <2022. 11. 1.>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등공민학교
 - 라.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외국어·국제·예술·체육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
 - 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 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아.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각종학교 및 외국인학교를 말한다)
 - 차.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 1) 초등학교의 과정만 운영하는 대안학교
 - 2)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대안학교
 - 카. 그 밖에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2. 학교 수, 학급 수 및 학생 수는 교부금 교부연도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부연도에 학교 수, 학급 수 또는 학생 수의 증감이 계획되거나 예정된 경우에는 증감 예상 수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3. 측정항목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산정기준에서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는 2010년 이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본교만 해당한다)부터 산정한다.
4. 측정항목 제2호가목의 학교경비를 산정할 때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학교의 경우에는 1.5를 곱하여 산정한다.
- 4의2. 측정항목 제2호나목의 학급경비를 산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교급별 학급당 기준인원을 초과하는 학급의 경우에는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측정항목 제2호마목의 산정기준에서 “교과교실제도를 운영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든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학생들이 각 교과 시간에 해당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
 - 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일부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해당 교과시간에는 그 전용교실을 활용하여 교과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로서 교부연도 이전까지 측정항목 제2호마목에 따른 산정기준에 포함된 횟수가 총 3회 이하인 학교
6. 삭제 <2020. 10. 20.>
7. 측정항목 제2호사목에서 “추가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가. 기숙형 고등학교: 교육 낙후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중 기숙사 운영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고등학교
 - 나. 통폐합 기숙학교: 학교 통폐합에 따라 투자심사를 거쳐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 다. 삭제 <2021. 11. 16.>
 - 라. 일반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이 경우 일반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의 학교 수는 2017년 이후 지정이 취소된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국제계열 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를 누적인 것을 말하되, 해당 학교가 지정 취소된 연도에서 3년이 경과한 연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는 해당 학교를 제외하고 일반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의 학교 수를 산정한다.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마. 특성화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이 경우 해당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심사를 거쳐 전환·증설·개편 계획을 인정받은 고등학교로 한정한다.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려는 고등학교
 - 2) 직업교육 학급을 증설하려는 고등학교
 - 3)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직업교육 학과를 개편하려는 고등학교
 - 바. 학점제 운영 직업계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각 호의 학교로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학점제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 사. 학점제 운영 일반계 고등학교: 다음의 학교로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학점제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의 일반고등학교(같은 영 제43조제2항제1호의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의 특수목적고등학교(같은 조 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 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이 경우 학점제 운영에 드는 경비는 제외하고 지원한다.
 - 자. 학점제 운영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특수학교로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학점제를 운영하는 특수학교

8. 측정항목 제3호가목의 산정기준에서 “기준 교직원 수”란 해당 시·도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학생 수를 전국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교직원 1명당 평균 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된 교직원 수의 합을 말하며,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대도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동
 - 나. 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인구 50만 미만의 시를 말한다)의 동
 - 다. 읍·면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읍·면
 - 라. 도서·벽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중 학생 수 300명 미만의 학교가 있는 도서·벽지
9. 측정항목 제5호나목의 산정기준에서 “이전 대상 학교”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할 예정인 지역으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하는 학교를 말한다.
- 9의2. 측정항목 제5호다목에서 “통합·운영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통합·운영하는 학교를 말하고, “이전 대상 학교”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할 예정인 지역으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하는 학교를 말한다.
10. 측정항목 제5호나목·라목 및 사목의 산정기준에서 “표준 토지면적” 및 “표준 건축연면적”이란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정한 토지면적 및 건축연면적을 말한다.
11. 측정항목 제5호마목에서 학교 통폐합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가. 2개 이상의 학교(본교만 해당한다)가 통폐합할 것
 - 나. 통폐합한 학교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 학교의 개축·이전·증설·대수선이나 학교의 신설이 필요할 것
12. 측정항목 제5호다목 및 마목의 측정단위 중 “건축연면적”은 다음 각 목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한다.
 - 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건축연면적
 - 나. 기숙사 및 교직원사택, 평생교육시설, 잔디운동장, 수영장 등 학교 다목적 시설의 건축연면적
13. 측정항목 제5호마목의 산정기준에서 “이전 대상 학교”란 2개 이상의 학교(본교만 해당한다)를 통폐합하여 기존 학교 부지 외의 장소로 옮기는 학교를 말한다.
14. 삭제 <2019. 2. 26.>
15. 측정항목 제5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은 서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6. 측정항목 제5호사목의 산정기준에서 “이전 대상 사립학교”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를 말한다.
 - 가. 학생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사립 중학교 또는 사립 고등학교일 것
 - 나. 이전되는 학교의 학생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인근의 다른 학교로 배치될 수 있을 것
 - 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할 예정인 지역으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할 것
17. 측정항목 제5호사목 중 사립학교 이전비는 기존 학교의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에서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약 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제외한 표준 건축비로 한다.
18. 측정항목 제5호자목의 산정기준에서 “표준 토지면적” 및 “표준 건축연면적”이란 교육부장관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규모에 따라 정한 토지면적 및 건축연면적을 말한다.
19.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 각 회계연도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부록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11. 4.>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1. 교직원인건비	교원 수	전년도 교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율	전전년도 보수총액 ÷ 전전년도 교원 수
	교원 증원 수	교원 증원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증원 교원 1명당 소요액
	교육전문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전문직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율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전문직원 1명당 임금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 해당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무직원 수 × 해당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율	·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1명당 임금 · 사무직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무직원 1명당 임금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율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단가
	명예퇴직 교원 수	1) 교육부장관이 교원수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원 수 × 단위비용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원수급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명예퇴직 교육전문직원 수	1)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육전문직원 수 × 단위비용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육전문직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명예퇴직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1)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 단위비용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2. 학교운영비	가. 학교경비	학교 수	Σ(학교급별·규모별 학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나. 학급경비	학급 수	Σ(학교급별 학급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비고 1에 따른다. · 유치원: 학급당 7,466천원 · 초등학교: 학급당 7,099천원 · 중학교: 학급당 6,600천원 · 방송통신중학교: 학급당 3,962천원 · 일반고등학교: 학급당 6,619천원 ·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급당 6,423천원 ·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급당 3,602천원 · 특수학교: 학급당 13,959천원 · 영재학교: 학급당 10,522천원 · 대안학교 - 초등학교 과정 운영: 학급당 7,099천원 - 중학교 과정 운영: 학급당 9,030천원 - 고등학교 과정 운영: 학급당 8,702천원

다. 학생경비	학생 수	$\Sigma(\text{학교급별 학생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학생당 264천원 · 초등학교: 학생당 627천원 · 중학교: 학생당 651천원 · 방송통신중학교: 학생당 687천원 · 일반고등학교: 학생당 666천원 ·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당 799천원 ·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당 585천원 · 특수학교: 학생당 1,177천원 · 영재학교: 학생당 1,942천원 · 대안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과정 운영: 학생당 905천원 - 중학교 과정 운영: 학생당 1,192천원 - 고등학교 과정 운영: 학생당 1,171천원
라. 삭제 <2020. 10. 20.>			
마. 교과교실 운영비	학교 수	학교 수 \times 단위비용 \times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1) 선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학급 미만: 50,000천원 · 16~23학급: 80,000천원 · 24학급 이상: 100,000천원 2) 과목중점형: 40,000천원
	증설 교과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과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교과교실 전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과교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바. 삭제 <2020. 10. 20.>			
사. 추가 운영비	학교 수	$\Sigma\{\text{유형별} \cdot \text{규모(연차)별 학교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비고 2의2에 따른다.
아. 삭제 <2019. 2. 26.>			
자. 삭제 <2019. 2. 26.>			
차. 삭제 <2019. 2. 26.>			
3. 교육행정비	가. 기관 운영비	학교 수, 학생 수 및 기준 교직원 수	$[(\text{학교 수} \times \text{학교당 단위비용}) + (\text{학생 수} \times \text{학생당 단위비용}) + (\text{기준 교직원 수} \times \text{기준 교직원 당 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인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당 단위비용: 9,406천원 · 학생당 단위비용: 73천원 · 기준 교직원당 단위비용: 566천원
	나. 지방선거 경비	지방선거경비	1)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 관리 경비 2)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4. 교육복지지원비	가. 지역 간 균형교육비	학교 수, 소재 행정구역 면적, 도서·벽지 소재 학교의 학생 수	$\{(\text{해당 시·도의 행정구역 면적} \div \text{해당 시·도의 학교 수}) \div \Sigma(\text{시·도별 행정구역 면적} \div \text{시·도별 학교 수})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text{해당 시·도의 도서·벽지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 \div \Sigma(\text{시·도별 도서·벽지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계층 간 균형교육비	학생 수, 수급자 수,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	[[해당 시·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수,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 가정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 해당 시·도의 전체 학생 수) ÷ ∑(시·도별 수급자 수,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 가정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 시·도별 전체 학생 수)] × 50% + (해당 시·도의 수급자 수,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 전체 시·도의 수급자 수,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 50%]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정보화 지원 수급자 수	(만 6세에서 만 15세까지의 수급자 수 × 10% × 80%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개인용 컴퓨터 지원액) + (만 6세에서 만 17세까지의 수급자 수 × 80%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통신비 지원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1)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입학금·수업료 2)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부모 부담 경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중 미충원 학생 수	미충원 학생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충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보전비용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입학금, 수업료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	1) 교육부장관이 교육환경개선 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지, 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내 시설의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2) 정산결과 남는 금액 3) 정산결과 부족한 금액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의 금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단위비용	
	나. 공립학교 신설·이전(移轉)·증설비	토지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증설 교실 수	교실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다. 공립 통합·운영학교 신설·이전비	토지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토지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라. 공립 유치원 신설·증설비	토지면적	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공유재산 전환형 건축연면적	공유재산 전환형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증설 교실 수	교실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전환 교실 수		교실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매입 대상 사립 유치원 수	매입 대상 사립 유치원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립 유치원당 매입비		

마.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증설·대수선비	토지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토지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바. 삭제 <2019. 2. 26.>			
사. 사립학교 이전·증설비	건축연면적	1)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 [기존 학교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 -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약 금액] 2)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증설 교실 수	교실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아. 삭제 <2022. 11. 4.>			
자. 청사 신설·이전비	토지면적	{(교육청 청사 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 + (교육지원청 청사 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교육청 청사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 (교육지원청 청사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6. 유아교육비	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유아 수 1) $\Sigma(\text{연령별 유아 수} \times \text{단위비용})$ 2) 보육료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령별 지원액
	나.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교원 수 교원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교원 처우 수준, 교원의 학급 담당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원당 지원액
	다.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유치원 수 및 원아 수 (유치원 수 × 단위비용) + (원아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유치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단위비용
	라. 삭제 <2015.11.5.>		
7. 방과후학교 사업비	가. 방과후학교 사업지원	학급 수 1) 읍·면 지역 및 도서(島嶼)·벽지(僻地)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 단위비용 2) 대도시 및 시 지역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급당 연간 운영비
	나. 자유 수강권 지원	수급자 수 수급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생 1명당 연간 수강료
	다. 초등 돌봄 지원	학급 수	학급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실 수		교실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시설비
8. 고교무상교육지원	가. 입학금·수업료	학생 수 1) $\Sigma(\text{학생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1 - \text{교육청 부담분 비율})$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초·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각 시·도별 조례에 규정한 입학금·수업료
	나. 학교운영지원비	학생 수 1) $\Sigma(\text{학생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1 - \text{교육청 부담분 비율})$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각 시·도의 학교별 금액
	다. 교과용 도서 구입비	학생 수 1) $\Sigma(\text{학생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1 - \text{교육청 부담분 비율})$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각 시·도의 학교별 금액

80 • 대학 시설 복합화 사업을 위한 기준 마련

9. 재정결합보전	가. 지방채 상환	원리금 상환액	교육부장관이 원리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원금상환액 및 이자액
	나. 민자사업 지급금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교육부장관이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임대료
	다. 재정안정화 지원	지원액	[(해당 연도의 해당 시·도의 학교 수, 학급 수 또는 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설정한 기준제정 수요액) ÷ ∑(해당 연도의 시·도별 학교 수, 학급 수 또는 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설정한 기준제정수요액)]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비고

1. 측정항목 제2호가목의 단위비용은 다음 표에 따르되, 표에 명시되지 않은 학급수의 단위비용은 직선보간법(直線補間法)으로 산정한다.

(단위: 천원)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방송통신중학교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영재학교	대안학교				
	단설	병설	본교	분교장	본교	분교장							초등학교 과정 운영	중학교 과정 운영	고등학교 과정 운영		
3학급	162,093	53,816	342,859	241,810	448,381	248,093	18,168	448,430	728,703	22,449	542,002	-	380,172	518,026	501,342		
5학급	177,453	65,583	-	-	-	-		-	-		-	-	-	-	-	-	-
6학급	185,636	74,171	387,573	265,423	490,410	273,805		496,698	846,745		584,000	611,028	411,875	552,012	540,843		
7학급	193,131	-	-	-	-	-		-	-		-	-	-	-	-	-	
8학급	202,755	-	-	-	-	-		-	-		-	-	-	-	-	-	
12학급	242,475	-	449,883	-	558,283	-		594,497	1,316,433		671,877	1,224,644	454,470	606,764	603,627		
18학급	-	-	510,976	-	642,296	-		662,901	1,804,109		758,741	1,358,962	510,976	665,452	662,901		
24학급	-	-	567,322	-	688,030	-		719,098	1,939,273		817,111	1,555,068	567,322	702,123	719,098		
30학급	-	-	650,924	-	739,410	-		767,497	2,441,934		864,050	-	650,924	741,680	767,497		
36학급	-	-	703,149	-	799,520	-		856,790	2,740,815		901,286	1,829,225	-	-	-		
42학급	-	-	752,377	-	876,211	-		925,797	3,127,713		936,472	-	-	-	-		
48학급	-	-	802,478	-	921,766	-		970,767	3,239,796		980,633	-	-	-	-		
54학급	-	-	843,517	-	956,649	-		1,008,000	3,589,394		1,017,838	-	-	-	-		
60학급	-	-	898,950	-	-	-		-	-		-	-	-	-	-		

2. 측정항목 제2호마목의 단위비용에서 “선진형”이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든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학생들이 각 교과 시간에 해당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며, “과목중점형”이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일부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해당 교과시간에는 그 전용교실을 활용하여 교과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의2. 측정항목 제2호사목의 학교 유형별·규모(연차)별 단위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속형 고등학교

수용정원	100명 미만	100명 이상 150명 미만	150명 이상 200명 미만	200명 이상
단위비용	240,000천원	270,000천원	300,000천원	330,000천원

나. 통폐합 지속학교

수용정원	100명 미만	100명 이상 150명 미만	150명 이상 200명 미만	200명 이상
단위비용	300,000천원	400,000천원	450,000천원	500,000천원

다. 삭제 <2021. 11. 16.>

라. 일반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

지정취소에 따른 일반고 전환 후 연도	1차 연도	2차 연도
단위비용	1,000,000천원	500,000천원

마. 특성화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 등

학교 유형	규모	단위비용
1)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려는 고등학교	가) 12학급 이상 18학급 미만	학교당 2,000,000천원
	나) 18학급 이상 30학급 미만	학교당 3,500,000천원
	다) 30학급 이상	학교당 5,000,000천원
2) 직업교육 학급을 증설하려는 고등학교	가) 1학급 이상 3학급 미만 증설	증설학급 수 × 150,000천원
	나) 3학급 이상 7학급 미만 증설	300,000천원 + [(증설학급 수-2) × 100,000천원]
	다) 7학급 이상 증설	800,000천원
3) 직업교육 학과를 개편하려는 고등학교	가) 1학급 이상 3학급 미만 개편	개편학급 수 × 250,000천원
	나) 3학급 이상 7학급 미만 개편	500,000천원 + [(개편학급 수-2) × 150,000천원]
	다) 7학급 이상 10학급 미만 개편	1,100,000천원 + [(개편학급 수-6) × 100,000천원]
	라) 10학급 이상 개편	1,500,000천원

바. 학점제 운영 직업계 고등학교

1) 운영비

학교 유형	학급수	단위비용	비고
가)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	(1) 18학급 미만	147,500천원	가)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에 운영비를 지원 하는 경우 학급수는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에 설치된 학급수로 산정한다
	(2)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	188,000천원	
	(3) 27학급 이상	228,000천원	
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1) 18학급 미만	132,000천원	
	(2)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	168,000천원	
	(3) 27학급 이상	204,000천원	
다)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1) 18학급 미만	66,000천원	
	(2)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	84,000천원	
	(3) 27학급 이상	102,000천원	

2) 교육환경 구축비

학교 유형	단위비용	비고
가) 학과 내 학점제 운영 세부전공 과정을 개설하려는 고등학교	(세부전공으로 개설한 전체 과정 수 - 세부전공을 개설한 전체 학급 수) × 125,000천원	해당 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시설, 설비의 설치비 등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최초 1회 지원한다
나) 학과 내 학점제 운영 부전공 과정을 개설하려는 고등학교	부전공으로 개설한 전체 과정 수 × 125,000천원	
다) 교내에 설치된 공동실습소에 학점제 운영 교육과정을 개설하려는 고등학교	공동실습소에 개설한 학점제 운영 교육과정 수 × 125,000천원	

사. 학점제 운영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수	12학급 이하	13학급 이상 20학급 미만	20학급 이상
단위비용	29,000천원	34,000천원	38,000천원

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급수	18학급 미만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	27학급 이상
단위비용	558,000천원	620,000천원	682,000천원

자. 학점제 운영 특수학교

학급수	12학급 이하	13학급 이상 20학급 미만	20학급 이상
단위비용	29,000천원	34,000천원	38,000천원

3. 측정항목 제3호가목의 산정공식에서 “교직원”이란 교원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을 제외한 직원을 말한다.
4. 측정항목 제4호나목의 산정공식에서 “학부모 부담 경비”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제외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5. 측정항목 제5호사목의 산정공식에서 “[기존 학교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 -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약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으로 산정한다.
6.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 각 회계연도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7. 측정항목 제8호의 산정공식에서 교육청 부담분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법 제14조에 따라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8. 측정항목 제8호나목 및 다목의 단위비용에서 각 시·도의 학교별 금액은 전년도 각 시·도의 학교별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